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4.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2000. 5. 2
- 다. 상정일자 : 2000. 5. 1(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건설과장 김용현

나. 개정사유

- 1999. 2. 8 법률 5914호로 도로법의 일부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3 과오납금의 이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과오납금의 반환에 있어서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을 동 조례 7조의 1에 신설하고 제10조의 부당 이득금의 징수를 변상금의 징수로 하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첨 부 :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 2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도로법 일부 개정으로 인한 과오납된 도로점용료 반환규정 신설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안 제7조의 1)

-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안 제10조)

-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 개정

3.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78조의2, 동법시행령 제36조의3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 (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변상금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점용료의 징수에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신 설)	<p>제7조의1 (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p>
제10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p>제10조 (변상금의 징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p>